

강의담당시수에 관한 규정

개정 2019.02.25. 개정 2020.07.16. 개정 2021.01.22. 개정 2021.02.22.
개정 2021.03.31. 개정 2021.08.26. 개정 2022.01.19. 개정 2022.02.23.
개정 2022.06.27. 개정 2023.02.20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) 교원이 1주간 담당하여야 할 강의담당시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주간시수의 계산)

- ① 주간시수는 1주간의 강의담당시수를 합산한 시수로 한다.
- ② 강의담당시수는 시간단위로 계산하되,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환산한다.
- ③ 1교과목의 강의를 2인 이상이 담당할 경우의 강의담당시수는 그 교과목의 강의를 1인이 담당할 경우의 강의담당시수를 담당교원의 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. 단, 실습실 또는 강의시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총장의 재가를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3조 (책임시수)

- ①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강의시수는 12시간으로 한다.
- ② 책임강의시수는 대학 및 산업체위탁교육 담당시간을 통산한다.
- ③ 최종수강인원이 90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수의 150%, 150명이상인 경우에는 시수의 200%를 인정한다.
- ④ 최종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시수의 50%를 인정한다. 단, 교과목의 사정으로 인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⑤ 전항의 1시간이라 함은 1교시를 말한다.
- ⑥ 겸임교원책임시수는 겸임교원 임용 규정 제7조에 따른다.<개정 2021.02.22.>
- ⑦ 초빙교원책임시수는 초빙교원 등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다.<개정 2021.02.22.>
- ⑧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교과목 중 주말에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수의 150%를 인정한다.<개정 2021.01.22.>
- ⑨ 강사책임시수는 강사 임용 규정 제18조에 따른다.<신설 2021.08.26.>

제4조 (책임시간의 일부면제)

총장은 보직을 가진 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을 다음과 같이 담당시킬 수 있다.

- ① 총 장 : 면제
- ②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입학학생처장, 총무처장, 산학협력단장, 혜전유치원장, 국제교육원장 : 6시간 <개정2016.07.19., 2019.02.25., 2020.07.16., 2022.01.19., 2022.02.23.>
- ③ <삭제 2021.01.22.>
- ④ <삭제 2021.01.22.>

- ⑤ <삭제 2021.01.22.>
- ⑥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책임강의 시수의 30% 이상을 면제할 수 있다.
<신설2012.09.05.>
- ⑦ 전항에 규정한 교원 이외에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원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책임시간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<개정2011.8.1.><제6항에서 이동2012.09.05.>
- ⑧ 겸직자의 경우 상위보직 기준으로 처리한다.<신설2011.8.1.><제7항에서 이동2012.09.05.>
- ⑨ ②항 외의 보직을 가진 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10시간으로 한다. 단, 실습시물레이션센터장은 책임시간의 일부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.<신설 2021.01.22.><개정 2021.03.31., 2022.02.23.>

제5조 (한계시수)

- ① 전임교원의 강의시간은 주당 1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 비전임 교원은 주당 12시간 이하로 하고, 강사는 주당 9시간 이하로 한다.
<개정2011.8.1., 2015.2.24., 2016.01.05., 2021.08.26., 2022.06.27.>
- ② 강의시간은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실습시간 및 총장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③ 대학 및 산업체위탁교육 담당시간을 통산한다.<개정2011.8.1.>

제6조 (초과시수)

- ① 전임교원이 책임강의시수 이상의 강의를 한 때에는 강사료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강사료를 지급한다.
- ②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한계시수 초과 강의에 대하여는 초과시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<개정2011.8.1.>

제7조 (책임시수의 미달)

책임시수가 미달된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규정의 초과강사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매 학기별로 급여에서 공제한다. 단, 학기 중 보직변경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전문개정2011.8.1.>

제8조 (강의시간 배당)

- ① 전임교원의 강의시간 배당은 대학, 산업체위탁교육 순으로 하고 책임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대학에서 담당하여야 한다.
- ② 강의담당은 동일학과의 동일학년에 치중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.

제9조 (인정시수)

간호학과 임상실습지도 인정시수는 주당 1학점에 3시수로 한다.<개정 2023.02.20.>

제10조 (기타)

강의담당시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.
<개정 2023.02.20.>

부 칙(2008.08.21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07.05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09.05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2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02.2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01.05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07.19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2.25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07.16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01.22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0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02.22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03.31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08.26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1.19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02.23>

제1조 (시행일)

이 세칙은 2022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06.27>

제1조 (시행일)

이 세칙은 2022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02.20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3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